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1998. 4. 1. 제15,767호)	개 정(1999. 3. 31. 제16,221호)
<p><b>제1조(목적)</b> 이 영은 <u>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사업의 분류등)</b> ① 법 제2조(정의)제1호 각목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u>한국표준산업분류</u>에 따른다.</p> <p>② 법 제2조(정의)제1호 과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연탄제조업을 말한다.</p>	<p><b>제1조(목적)</b> .....<u>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u>.....</p> <p><b>제2조(지주회사의 기준)</b> ① <u>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본문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상인 회사"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p> <p>② 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p>
<p><b>제3조(기업집단의 범위)</b>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p> <p>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지분을 포함하며, 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인 회사</p> <p>가. (생 랴)</p> <p>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u>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u>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b>제3조(기업집단의 범위)</b> .....</p> <p>1. ....</p> <p>.....[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신규 채무보증금 지대상의 제외요건)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에서 같다].....</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p> <p>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u>최다출연자가</u> .....</p> <p>.....</p>

현 행	개 정
<p>다. ~ 마. (생 략)</p> <p>2. (생 략)</p> <p>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다음 각목의 요건(이하 “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p> <p>가. ~ 라. (생 략)</p> <p>마. 최근 1년간의 각 동일인측 계열회사의 총매출 또는 총매입 거래액 중에서 친족측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또는 매입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미만일 것. 각 친족측 계열회사의 총매출 또는 총매입 거래액중에서 동일인측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또는 매입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p>	<p>다. ~ 마.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p> <p>.....</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과.....</p> <p>.....</p> <p>.....</p> <p>.....</p> <p>.....</p> <p>.....</p> <p>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이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p> <p>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p> <p>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기타</p>

현 행	개 정
<p>2 · 3. (생략)</p> <p><u>4.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없을 것</u></p> <p>③ (생략)</p> <p>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등)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법률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한 감사인이 작성한 당해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u>법인</u></p> <p>2 · 3. (현행과 같음)</p> <p><u>4.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의 채무보증이 없을 것</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2. 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동일인측 계열회사 및 친족측 계열회사의 등기부등본</p> <p>3. 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현황</p>
<p><b>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등)</b> ① 법 제2조(정의)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한다)의 최근 1년간 국내에 공급된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천억원이상인 시장에서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의한 남용행위의 우려가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p> <p>1.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진입제한이 없는 시장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것</p> <p>2. 제7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고시일(이하 이 조에서 “지정·고시일”이라 한다)이전 2년간 실질적으로 가격인상을 한 사실이 없을 것</p> <p>3. 지정·고시일이전 2년간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또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조치</p>	<p><b>제4조(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 등)</b> ① 법 제2조(정의)제7호 단서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당해 행위가 인지일이나 신고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인지일이나 신고일을 당해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동안에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현 행	개 정
<p><u>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u></p> <p>② 법 제2조(정의)제7호에서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의 국내에 공급된 금액중에서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 출하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p>	<p>② 법 제2조(정의)제7호 및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서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동안에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중에서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p>
<p>③ 법 제2조(정의)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p> <p>〈신 설〉</p>	<p>③ 법 제2조(정의)제7호 및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p> <p>④ 법 제2조(정의)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4조의2(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 및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요청에 관한 사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조(부당한 가격의 결정기준) ①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1. 일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상당기간 수급의 변동이나 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상승하거나 그 하락이 근소한 경우</p> <p>2.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정당한 이유없이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경우</p>	<p>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다.</p> <p>②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현 행	개 정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불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2년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li> <li>2. 가격설정을 위한 원가계산자료</li> <li>3. 원재료 및 상품의 수입가격동향</li> <li>4. 생산·출고·가격동향 및 거래조건에 관한 자료</li> <li>5.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의 배부기준 및 내용</li> </ol>	<p>1.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p> <p>2.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p> <p>③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li> <li>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li> <li>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li> </ol> <p>④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li> <li>2.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li> <li>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li> </ol> <p>⑤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li> </ol>





현 행	개 정
<p>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p> <p>1. 기술개발의 촉진, 적정경영규모의 확보 등으로 가격 및 품질면에서 현저하게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우</p> <p>2. 해외시장에서 정보수집, 판매활동 등 기업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수출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경우</p> <p><u>제15조(지주회사의 범위) 법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 금지등)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로 한다. 다만, 당해 회사의 출자규모, 출자목적, 출자비율 등을 참작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 등) ①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신고인 ·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이내</p> <p>2.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30일이내</p> <p>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신고에 있어서 설립에 참여하는 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지주회사로서 사업연도 중 소유 주식의 감소,</p>

현 행	개 정
	<p>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회사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개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신 설〉	<p>제15조의2(지배목적의 주식소유)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제1항제3호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이라 함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외한다]과 합하여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형성·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는 이를 지배목적으로 보지 아니한다.</p>
〈신 설〉	<p>제15조의3(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 제한)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제1항제4호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역무의 제공</li> <li>2.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li> <li>3.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연구</li> <li>4. 기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li> </ol> <p>제15조의4(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 소유제한)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p>
〈신 설〉	

현 행	개 정
	<p>제2항에서 “당해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회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목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li> <li>나.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등의 역무의 제공</li> <li>다.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한 제품의 생산·판매</li> <li>라. 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 등의 공급</li> <li>마. 기타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li> </ol> </li> <li>2. 다른 회사의 주식을 제15조의2(지배목적의 소유)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li> </ol> <p>제15조의5(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①</p> <p>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명칭·소재지·설립일·사업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 등 회사의 일반현황</li> <li>2.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주현황</li> <li>3.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식소유현황</li> <li>4.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납입자본금·자본총액·부채총액·자산총액 등 재무현황</li> <li>5. 자회사가 제15조의4(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 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주주현황·주식소유현황·재무현황</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식회사의 외부</li> </ol>

현 행	개 정
<p><u>제16조(외국인투자사업을 위한 지주회사의 설립승인등) ① 법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금지등)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지주회사에의 전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하고자 하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전 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1.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사업내용</u></p> <p><u>2. 주식인수예정자의 성명 또는 명칭(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 및 당해 회사 주주의 명칭)</u></p> <p><u>3. 주식인수예정금액 및 인수비율(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비율)</u></p> <p><u>4. 주식인수예정자가 영위하는 사업내용(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u></p> <p><u>5. 지주회사의 설립사유(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유)</u></p> <p><u>②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지주회사에의 전환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의 신청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u></p>	<p><u>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한한다)</u></p> <p><u>2. 자회사의 주주명부</u></p> <p><u>3.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회사의 영업보고서</u></p> <p><u>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u></p> <p><u>〈삭제〉</u></p>







현 행	개 정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지정·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일에 그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지정·통지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당시 그 소속회사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통지일</li> <li>2.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이후 그 소속회사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li> </ol> <p>⑤ (생략)</p> <p>제21조의2(관계기관의 범위) 법 제14조의3(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p> <p>제21조의3(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가 회사의 내부조직을 이용하는 등 기업결합의 방법을 통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u>요건</u>에 해당할 것</li> <li>(2) · (3) (생략)</li> </ol> </li> <li>나. · 다. (생략)</li> </ol> </li> <li>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li> </ol>	<p>④ 법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 지정·통지를 받은 날</li> <li>2. .....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li> </ol> <p>⑤ (현행과 같음)</p> <p>제21조의2(관계기관의 범위) 법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제4호</p> <p>제21조의3(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li> </ol>

현 행	개 정
<p>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행위</p> <p>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p> <p>② (생략)</p> <p><b>제22조(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 규정의 준용)</b> 제8조(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의 규정은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 중 “법 제5조(시정조치)”는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으로 본다.</p> <p>〈신설〉</p>	<p>3. ..... 제1호 ..... .....</p> <p>②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신설〉</p>	<p><b>제23조(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b>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제1항제4호·제5호,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및 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p> <p><b>제23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b>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을 정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의 내용이 주식처분인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임원의 사임인 경우에는 당해 사실의 등기일, 영업의 양도인 경우에는 관련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매분기·매사업연도 등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로서 이를</p>

현 행	개 정
	<p>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p>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정조치 불이행의 사유·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당해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p> <p>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행위를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의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p> <p>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p> <p>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시정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⑧ 제64조(독촉) 및 제64조의2(체납처분의 위탁)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관한 독촉 및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p> <p>제32조(공동행위의 실시상황보고) ①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이하 “공동행위인”)</p> <p>제32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동행위를 폐</p>

현 행	개 정
<p>가사업자”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6월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참가사업자별 출고실적 2. 출고 및 유통단계별 가격동향 3. 수급 및 시설가동상황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의 인가시에 부대조건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공동행위인가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로부터 탈퇴하는 사업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공동행위인가사업자는 참가사업자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제33조(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규정의 준용)	〈삭 제〉
제8조(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의 규정은 법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중 “법 제5조(시정조치)”는 “법 제21조(시정조치)”로 본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u>별표와</u> 같다. ② (생략)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 ..... ..... 별표 1과 .....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공정경쟁규약) ① (생략)	제37조(공정경쟁규약)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규약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규약의 실시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38조(정정광고등에 관한 협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정정광고 또는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삭 제〉
제39조(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 ① 사업자단체가 법	〈삭 제〉



현 행	개 정
<p><b>제45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신고) ① 법 제30조</b>  <u>(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신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u>1. 계약상대방의 상호·대표자 성명 및 주소</u></p> <p><u>2. 계약상대방의 사업개요</u></p> <p><u>3. 계약체결일</u></p> <p><u>4. 계약의 내용</u></p> <p><u>5. 대상상품의 판매구역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u></p> <p><u>② 제1항의 신고를 한 자가 당해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다수의 다른 사업자와 한 때에는 사업자수와 계약서 1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매년 1월말 현재의 계약실시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u>〈삭제〉</u></p>
<p><b>제46조(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규정의 준용)</b>  <u>제8조(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의 규정은 법 제3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중 “법 제5조(시정조치)”는 “법 제31조(시정조치)”로 본다.</u></p>	<p><u>〈삭제〉</u></p>
<p><b>제61조(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 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b></p> <p><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u></p> <p><u>③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u></p> <p><u>〈신설〉</u></p>	<p><b>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종별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b></p> <p><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u></p> <p><u>③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p> <p><b>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① 공정거래위</b></p>

현 행	개 정
<p><u>제64조(담보의 종류·평가 등) 국세기본법 제29조(담보의 종류) 내지 제34조(담보의 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납세담보의 평가) 내지 제17조(납세담보의 해제)의 규정은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담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u></p> <p><u>〈신설〉</u></p>	<p>원회는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 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u>제64조(독촉) ① 법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p> <p><u>제64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u></p> <p>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p> <p>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p> <p>3. 납부독촉장</p> <p>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p> <p>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p>